

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 법령용어를 정비 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공유재산심의회 위촉직 위원 연임제한 규정(안 제4조)
-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추가(안 제5조)
-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의 기준가격 및 토지 기준면적 조항 신설(안 제12조)
-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범위 확대(안 제32조)
- 매각대금 납부 시 이자 없이 분할납부 가능한 대상 확대(안 제38조)
- 변상금 징수유예 기간 규정(안 제62조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
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상위법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관련 법인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.